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영호 (통일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32호, 2023.6.13. 공포, 2023.12.14. 시행)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북한 인접지역’의 범위(안 제2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나.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제3조부터 제11조)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 요청시 의견개진 사항과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 의견 회신 등을 규정

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안 제13조)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밖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함.

라.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안 제16부터 제20조)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의 작성 방법, 승인신청, 협의 사항, 승인의 고시 등 세부 내용에 대해 규정함.

마. 입주기업의 기준 및 범위(안 제24조)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과 범위는 교류협력법상 교역업체, 남북 경제협력사업 승인기업 및 이와 관련 전·후방 연관 사업, 융·복합 고도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6조)

국가가 특구의 기반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정함.

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7부터 제34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41조)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 및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 신고접수, 대집행 등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자. 과태료 부과(안 제42조)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시행령 전문 별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제3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요청)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1. 지정을 요청하는 평화경제특구가 법 제9조 각호의 사항과 부합하는 정도
 2. 지정을 요청하는 평화경제특구가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 ② 시·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 지정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법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① 법 제8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평화경제특구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협의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평화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법 제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국유지·공유지이거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등)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에 공동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동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평화경제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해당 평화경제특구의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3. 해당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4. 해당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할 기업 수요
2. 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9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평화경제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9.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②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평화경제특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평화경제특구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재원 조달방법 항목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
 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변경 면적 산정은 가장 최근에 고시된 개발계획의 면적을 기준으로 증감을 산정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②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해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특구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단위개발사업지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3. 평화경제특구 내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자

③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을 구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을 50/10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 기한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매수협의 기준금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법 제6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개발사업시행기간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6.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8. 그 밖에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8.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1.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③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시 협의사항)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 위원회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심의·의결 시 추가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실시계획

제19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4. 개발사업시행기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그 밖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제22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2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하수도시설: 평화경제특구 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평화경제특구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

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평화경제특구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지역난방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제24조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활동 중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 및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 이란 제1항의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

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1. 자재·장비
2. 금융
3. 교육·훈련
4. 유통·서비스
5. 관광
6. 기타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2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1. 고용창출의 규모
2.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에 미치는 효과
3.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4. 평화경제특구 내 입주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입주기업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평화경제특구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화경제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평화경제특구 안의 간선도로
3.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4. 공원·녹지
5. 공동구·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구와의 연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관광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5. 법 제27조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 거주 내·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5항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남북관계·법률·고용노동·환경·투자·교통물류·도시계획·건설·부동산·산업·과학기술 등 평화경제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0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평화경제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

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제35조(업무 등)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옴부즈만의 기능) ① 법 제32조에 따른 옴부즈만은 남북관계 또는 경제특구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2.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조사 및 처리
3. 평화경제특구 체류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④ 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음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법 제34조제2항에서 말하는 “투자환경등의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된 법·제도 개선
2.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3.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4. 내·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5.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제38조(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35조제2항에서 말하는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9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평화경제특
별구역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
가 기준·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미리 알려
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변경요청시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접수시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기한 연기시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 신고접
수,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2.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공검사, 준공검사 이전 사용허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준공지구의 관리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38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500	700	1,00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500	70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협력지구관리과	
연 락 처	(02) 730-6229